

「구미시 체육인 인권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」

## 심사보고서

### 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: 2025년 3월 5일

나. 발 의 자: 김영태, 정지원 의원 (2인)

다. 찬 성 자: 김영길, 김원섭, 박세채, 신용하, 안주찬, 이명희  
이상호, 이정희, 추은희 의원 (9인)

라. 회부일자: 2025년 3월 6일

마. 상정일자: 2025년 3월 14일

제28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

제1차 문화환경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### 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: 김 영 태 의원

#### 나. 제안이유

- 구미시 체육인의 인권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체육인 보호와 권익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## 다. 주요내용

- 체육인 인권 헌장(안 제4조)
- 체육인 인권 사업(안 제5조)
-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심의(안 제8조)
- 인권침해 신고 및 상담(안 제9조)
- 체육인 인권 교육(안 제10조)
- 징계 이력 확인(안 제11조)
-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의 설치·관리(안 제12조)
- 협력체계 구축(안 제13조)

## 라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
  -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10조의5, 제18조의2, 제18조의10, 제18조의13, 제18조의15
  - 「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」 제18조의3, 제18조의6

## 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장 창 곤

### ○ 본 조례안은

- 체육인 인권 사업, 인권 침해 신고·상담 및 상위법 규정 사항과 관련 내용을 구체화하여 안전한 스포츠 환경을 조성하고 체육인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발의된 안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체육인 인권 보호의 법적 근거 마련으로 인권 보호 사업을 실시하고, 구미시와 체육단체 등에 체육인 보호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여 관내 체육인의 인권 보호와 의식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.
- 다만, 본 조례의 개정이 선언적 의미로 그치지 않도록 집행 부서에서는 신고·상담센터 운영, 기관별 협력체계 구축 등 인권 보호를 위한 실질적 사업계획 및 예산의 수립이 필요할 것이며, 체육인 인권 교육이 강화될 수 있도록 부서의 관리·감독이 병행되어야 할 것임. 또한 징계이력 확인 절차 및 피해자 보호 시스템이 지속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지도, 감독을 강화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5. 토론요지: 생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: 없음

7. 심사결과: 원안가결